

의안
번호

48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6. 10.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양순임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483호

다. 제출일자 : 2025. 05. 16.

라. 회부일자 : 2025. 05. 21.

2. 제안이유

- 적용범위를 성북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에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적용범위를 성북구청 청사에서 성북구의회 청사를 포함하는 공공청사로 규정(조례명 및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협의 절차 규정(안 제3조제2항)
- 다.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 결정 시 별도 근거 규정(안 제5조제2항)
- 라.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정 시 별도 근거 규정(안 제6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5. 20. ~ 2025. 05. 26.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의회 청사(이하 ‘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의회 청사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관제시스템 등 관리 장비의 미비와 운영 기준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주차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특히, 공원 이용객 등의 장기간 주차, 민원과 무관한 외부 차량의 상시 주차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의회를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의 주차공간 확보가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청사의 본래 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저하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장 이용기준, 주차요금부과 및 징수대상, 관리주체 간 협의 등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주요내용

- 제명 및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성북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음. 또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적용 대상을 성북구 청사와 의회 청사로 명시함.
- 안 제3조제2항 신설은 공공청사 중 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기관 간 운영 협력체계를 명문화함.

-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신설은 주차요금의 징수대상 및 요금 산정 시, 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의회 청사의 자율성과 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19조31)을 근거하여 의회 청사 부
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유료화 시행 시 개운산 공원 이용객 등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민원 발
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 됨.

-
- 1)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
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024. 1. 9.>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
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
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